

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병상 간 거리 확보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조정 방안 통보

1. 특수의료장비 관련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보건복지부는 '17.2월 발표된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 도입에 따라 의료기관의 병상에 변동이 예상되는 바, 이에 따른 「특수의료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」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.
3. 이에, 각 시도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관할 시군구에 동 사항을 전달하여 주시고,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 변경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적극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변경내용

○ '17년 2월 이전 CT, MRI를 설치한 의료기관 중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 ' 병상 수 기준 조정'이 필요할 경우, 조정된 병상 수 기준 적용*

* 현행 CT, MRI 설치 시 병상 수 기준 200병상 → 150병상으로 조정
郡지역 CT 설치기준은 현행 100병상 → 75병상으로 조정하여 적용

※ 다만 병상을 타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는 의료기관이 공동활용병상 동의 해지를 통해 병상 수 감소할 경우, 해당 감소 분은 조정 병상 수로 인정되지 않음

○ '17년 2월 이후 CT, 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대한 병상기준 적용은 종전과 변동사항 없음 (현행 200병상 기준 적용, 郡 지역 100병상 적용)

- '17년 2월 이후 CT, 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병상 간 거리 기준 도입을 인지한 후 MRI 등을 설치했다고 간주되어 '조정 기준 적용'에서 배제

□ 변경 신청기간 : '19.1월 ~ 6월 (6개월 간)

□ 적용시기 : ' 19.1.1일 이후부터

□ 접수기관 :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 보건소

